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코스닥벤처 공모주 리츠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변경 사유 :** ① 투자 위험등급 변경(3등급→2등급)

② 제5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6. 5. 22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	투자위험등급 변경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2 등급(높은 위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9.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한함)	9.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한함)
요약정보			
-	투자위험등급 변경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2 등급(높은 위험)**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	**2026. 3. 31. 기준** **2026. 5. 9. 기준**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6. 5. 9. 기준**

TRUSTON 트러스톤자산운용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6. 4. 30. 기준**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 인당 300 만원 한도) * 300 만원 =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한도(3 천만원) × 소득공제율(10%)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 인당 300 만원 한도) * 300 만원 =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한도(3 천만원) × 소득공제율(10%)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6. 4. 30. 기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투자위험등급 변경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29.59% 투자위험등급 :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신 설〉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42.49%** 투자위험등급 : 2 등급(높은 위험) - 위험등급 변경 내역 **2026. 5. 22 : 최근 결산일 기준 3 년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 최대손실예상액)이 30% 초과 ~ 50%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3 등급에서 2 등급으로 변경**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	**2026. 3. 31. 기준** **2026. 5. 9. 기준**

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25 년 1 월 1 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세제 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세제 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 300만원 한도) * 300 만원 =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한도(3천만원) × 소득공제율(10%)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 300만원 한도) * 300 만원 =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한도(3천만원) × 소득공제율(10%)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6. 5. 9. 기준**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6. 5. 9. 기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5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6. 5. 9. 기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6. 4. 30. 기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27 기(2024.12.31) 제 26 기(2023.12.31)	**제 28 기(2025.12.31)** **제 27 기(2024.12.31)**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6. 4. 30. 기준**